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0
----------	------

발의년월일 : 2011. .
발 의 자 : 박창순 의원 등 18인

□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위원회 위원정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정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성격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조정(안 제3조)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되, 법령에 명시된 부분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관장함
 -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행정기획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 행정기획위원회
 - 성남산업진흥재단 :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성남문화재단 : 행정기획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를 12인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신설(안 제7조제8항)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만, 문화체육복지국 예산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포함한다.

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4호 가목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외한다.

마.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2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생략) 1. (생략) 2. 행정기획위원회 가. ~ 라. (생략) 마. <u>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신설) 바. (생략) 3. 경제환경위원회 가. ~ 라. (생략) 마. <u>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신설) 바. (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행정기획위원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다만, 문화체육복지국 예산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포함한다.</u> 바. <u>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사. (현행과 같음) 3. 경제환경위원회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u>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u>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사.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문화복지위원회 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나. ~ 라. (생략) 마. <u>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신설) 바. (생략) 5. 도시건설위원회 가. ~ 다. (생략) 라. <u>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과 수정·중원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생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⑦ (생략) (신설)	4. 문화복지위원회 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u>다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외한다.</u>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u>성남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바. <u>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사. (현행과 같음) 5. 도시건설위원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마.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 ①~⑦ (현행과 같음) <u>⑧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2인 이내로 한다.</u>